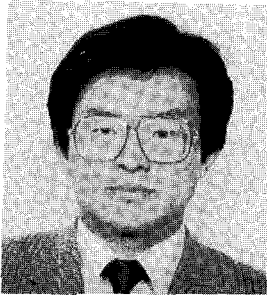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권성수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

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개인기업은 기업과 사업주의 가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주의 사망 또는 금치산등의 경우에 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출자자 또는 주주와는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사망하여도 법인은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같이 법인은 독립된 인격을 유지하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속성을 갖는다. 또한 법인기업은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세무상으로도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현행 법인세는 신고납세제도인 반면 소득세는 부과과세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인기업은 장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신고하면 개인기업보다는 세무상 간섭을 적게 받는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이를 주주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를 두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는 있으나 공제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금부담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에 이르면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하다. 즉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누진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기업이 유리할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거액의 자본과 높은 신용도가 필요하므로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법 인 기 업	개 인 기 업
장	① 자본조달이 유리함 ②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 ③ 세무상 간섭이 적음 ④ 규모가 큰 경우 세금 부담 유리	①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음 ② 규모가 작은 경우 세금 부담이 적음
단	①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세금 부담 가중	① 자본조달방법이 제한적임 ② 법인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나 대외신용도가 낮음

II. 법인전환 방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유형이 있다.

1.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 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발기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한 후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의 사업주간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수하는 방법이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개인기업이 사업주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다른 발기인은 현금을 출자(현물출자도 가능)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즉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법인 설립단계에서 출자의 형태로 승계하게 되며 법인설립업무와 개인사업의 승계업무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인전환시 거의 대부분이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전자는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의 양수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개인기업의 양수절차가 법인설립업무중의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위에서 설명한 두 방법은 하나의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용되나 중소기업간 통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법인전환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즉 이 방법은 합병장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기업을 흡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소기업간 통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②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이 통합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법인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흡수, 통합하는 경우

Ⅲ.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1. 법인전환과 관련된 세금의 개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개인기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개인기업의 자산(건물, 차량, 기계장치, 재고자산등)을 법인세 이전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등이 있다.

2. 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등에 있어서 모두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예로 들면 첫째, 개인사업자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할 것, 둘째,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이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일 것, 셋째,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상일 것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현물출자에 의하거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시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의 사업용자산(건물, 기계, 재고자산등)을 양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는 세가지의 법인전환 방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5. 조세지원 사항의 요약

위에서 설명한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지원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 목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간 통합
양도소득세	면제	면제	면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면제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	면제

Ⅳ. 법인전환방법의 선택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승계시킬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법인전환방법은 사업양수도에 의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법인승계 여부, 업종,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고 개인소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양수도의 방법이 좋을 것이나, 이 때에는 전환관련 경비와 세금의 산출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등의 면세가능업종이 아닌 경우나 사업용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 면제의 혜택이 없으므로 사업양수도의 방법이 편할 것이다. 제조업등을 영위하며 1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방법이 유리하다. 한편 두개 이상의 사업체를 법인전환하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좋으나 이 때는 모든 사업체가 합병장래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시에는 위와 같은 세금 혜택뿐 아니라 경비부담 및 전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